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2006. 5. 26 조례 제191호〕

일부개정 2012. 2. 24 조례 제 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 10. 2 조례 제 599호
일부개정 2015. 10. 2 조례 제 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제2조(위원회 구성)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증평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2〉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7조 삭제 〈2022. 12. 29〉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증평군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2015. 10. 2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